

稅務會計原則에 관한 研究

李 庸 俊

<目 次>	
I. 序 言	V. 課稅所得의 概念
II. 稅務會計學의 研究理念	VI. 課稅所得의 計算構造
III. 稅務會計學의 研究領域	VII. 稅務會計의 實踐的構造
IV. 企業會計原則의 尊重	VIII. 結 言

I. 序 言

租稅負擔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增大됨에 따라 現代企業經營에 있어서의 租稅負擔도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따라 租稅는 企業의 經營政策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政策要素로 등장하였고, 國民 個個人에 있어서도 租稅에 대한 利害가 生活과 直結되는 問題로서 擙頭되기에 이르렀다.

租稅定義의 通說인 “國家가 收入을 調達할 目的으로 特定한 個別報償이 없이 私經濟로부터 強制的으로 징수하는 貨幣 또는 財貨”라는 說明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過去에는 “國家로부터 強制的으로 徵收”한다는 租稅의 本質의 概念과 “外部로부터 強力한 規制에 의하여 服從한다”는 觀念이 支配해 왔었으나, 現代國家에 있어서는 納稅義務者相互間의 自覺과 責任으로 民主主義의 基調위에 徵收者나 納稅者가 相互尊重하고, 稅法을 遵守하는 納稅倫理觀으로 發展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現代稅法은 民主的인 申告納稅를 기초로 운용되고 있으며, 信賴할 수 있는 會計記錄을 作成할 수 있는 法人에 대해서는 申告納稅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綠色申告法人이나 誠實申告法人制度는 日本 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青色申告法人制度와 같이 稅法에서 정한 資格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書面申告의 認定과 함께 여러가지 惠澤을 주고 있다.

만약 이러한 制度가 모든 法人에 適用된다면, 國民의 自發的인 自己賦課體制를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制度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納稅額의 客觀性”이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뒷바침되어야 한다. 租稅法規는 納稅者의 權利를 最大限으로 옹호한다는 觀念을 가지고, 法規의 類推解釋이나 縮少 및 擴張解釋을 금지하고 納稅者인 國民의 不利益의 方向으로 해석하지 않게 運用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納稅義務가 憲法으로 보장된 義務인 동시에 하나의 權利로서, 國民이 法律을 遵守하여야 할 義務가 생기게 되고, 또한 法律에 나타나는 內容을 적절하게 實현시킬 責任이 國家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納稅者에게는 稅法을 尊重하고 遵守하는 意思를 形成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問題는 稅法에 따른 課稅所得의 計算體系이다. 納稅額의 客觀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課稅所得의 計算을 明確하게 하고 이에 邁正妥當한 稅率을 적용하여 納稅額을 算出하여야 하는 바, 課稅所得은 “一般的으로 認定된 公正妥當한 會計原則”을前提로 하여 計算되어야 한다. 이것은 課稅所得計算의 企業會計에 대한 依存性을 설명한 것이긴 하지만 文字 그대로 企業會計原則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고, 稅法과 企業會計間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稅法優先의 原則”이 作用하고 있어 企業會計와 稅務會計間의 差異는 많은 問題를 나타내고 있다.

稅務會計의 課稅所得은 企業利益을 조정하여 計算한다는 計算體系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獨自의인 稅務會計의 原則은 否定되어 왔다. 그러나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동일한 事實關係를 대상으로 놓고, 稅務會計는 課稅事實을 認識, 測定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企業會計는 財產狀態와 營業實績을 적정하게 認識, 測定하고자 하기 때문에 別個의 思考가 存在하게 된다.

그리하여 稅務會計는 獨自의인 研究領域을 내세워 租稅負擔의 社會的 配分關係를 實現한다는 理想을 가지고, “稅務會計學”이라는 特殊會計學分野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財政學에 있어서 租稅論은 個別經濟와 國民經濟의 經濟的 利害를 조정하여 國民經濟의 전진發展에 기여하는 것을 研究理念으로 하여 發展되어 왔다. 이에 反하여 稅務會計學은 租稅負擔의 公正한 配分秩序를 세우기 위하여 會計理論을 導入하여 會計의in 側面에서 經濟的 理解를 보다 合理的으로 調整할 것을 研究理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稅務會計學은 理論의으로 定立되지 못하고 稅務會計는 흔히 稅務簿記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學者들의 稅務會計學에 대한 概念의 定立은 明確하지 않으나 그 중에서 比較的妥當한 몇 가지 見解를 소개해 보면, 「稅務會計는 1事業年度에 있어서 發生된 益金과 發生된 損金을 對照하여 당시 施行되는 稅法規定에 맞추어 課稅所得을 正確히 計算하는 것이다」⁽¹⁾라고 하고, 혹은 「稅務會計는 課稅標準의 算定과 稅額의 算定을 의미하며, 廣義의 稅務會計는 租稅法規의 內容에 맞추어 納稅義務

(1) 李海東『稅務會計』大韓稅政研究會, 1976. p.11.

者가 납부할 稅額을 算定하는 일련의 節次를 말하고, 狹義의 稅務會計는 租稅法規에 의거하여 企業의 課稅所得을 과악하는 일련의 節次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²⁾

한편, 稅務會計의 概念規定에 있어서는 「稅務會計라고 말할 때, 그 内容에 어떤 固定觀念이 形成되고 있지 않다」고 說明하고, 稅務會計라는 用語가 理解되고 있는 類型을 보면 대체로 ①稅法解說觀, ②會計主導觀, ③會計聯結觀, ④稅務簿記觀 등으로 區分할 수 있다고 한다.⁽³⁾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見解의 差異로 因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本格的인 稅務會計學의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직 學問的인 體系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稅務會計는 徵收者인 政府의 입장에서만 論議되어 왔고 内容自體도 稅法의 研究와 解釋에 그쳤으며, 納稅者의 입장에서 행해졌어야 할 稅務會計의 基本原則研究가 소홀히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稅務行政面에 있어서도 비록 不明確한 法規解釋이라 할지라도 徵稅官廳의 態意의in 見解에 立脚하여 그대로 執行되어 왔다. 이러한 問題意識을 嘗案할 때 民主稅制에 있어서 稅法과 이의 運用은 納稅者自身의 判斷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稅務會計를 財政學, 商法, 租稅法律 등의 隣接科學의 研究와 함께 하나의 社會科學으로 發展시킬 理論的 體系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稅務會計를 “稅務會計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學問的 體系를 成立시키려는 意圖아래 稅務會計學의 概念, 研究理念과 研究領域과 같은 基礎理論을 整理하고, 이들 理論을 근거로 하여 課稅所得概念을 研究하며 課稅所得計算原則의 概要를 論議하고자 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보다 比重을 둔 것은 課稅所得의 概念으로서, 美國과 英國, 獨逸 등의 課稅所得에 관한 學說을 정리하고, 이를 批判的으로 檢討한 후에 우리나라 實情에 맞는 會計學의in 課稅所得概念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研究의 重點을 두었다. 이와 같이 課稅所得概念을 중요시 하는 이유는 課稅所得計算이 稅務會計의 基本인 동시에 궁극적인 目標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課稅所得concept이 정리된 후에는 企業會計上의 利益과 課稅所得의 差異를 해명하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調整을 검토함으로써 稅務會計의 理論體系를 形成하는 것이 方法論으로서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研究를 하기 위해서는 稅務會計가 다루고 있는 全般的인 各種 稅法 중에서 특히

(2) 宋双鍾『稅務會計論』, 法文社, 1978, p.16.

(3) 趙益淳『最新稅務會計』, 博英社, 1970. p.11.

法人稅法을 중심으로 하여 同施行令, 施行規則 및 例規通牒을 分析, 整理하고 問題를 검토한 다음 이미 실시되고 있는 企業會計原則과의 對照 分析을 通해서 稅務會計의 理論 構造를 分析하고 解明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稅務會計學”이라는 理論을 形成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우리나라 企業慣行이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보다는 各種 稅法의 規制를 받고 있어 會計學의 側面보다 法規定의 側面이 강하게 作用되어 있어 會計學 理論의 면에서 稅務會計理論의 相衝이 생기고,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差異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結果는 이와 같이 稅法 條文 하나 하나에 規制를 받지 않고, 稅務會計獨自의 理論研究領域을 확보함으로써 會計秩序를 形成, 유지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稅務會計學理論을 提供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稅務會計學의 研究理念

稅務會計는 個別經濟主體의 會計情報은 租稅負擔의 社會的 配分關係를 통하여 國家經濟에 有用한 情報를 提供하는 聯結關係이므로 稅務會計의 研究對象은 租稅負擔의 配分基準으로서의 課稅所得을 算定하고, 財務情報은 測定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行하는 租稅目的을 가진 會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稅務會計는 所得課稅를 目的으로 하는 所得稅나 法人稅의 경우에는 適正妥當한 租稅負擔能力을 測定基準으로 하는 課稅所得의 算定把握을 目的으로 하는 會計라고 할 수 있다.

稅務會計의 特質로서는 稅務會計가 稅法의 規制를 받게 되므로 法的인 會計이며, 동시에 政府라는 利害關係者에게 報告하는 對外報告會計에 속한다. 또한 稅務會計는 政府나 地方公共團體의 利害와 納稅者인 國民·企業間의 利害를 調整하고, 租稅負擔을 公正하게 配分함으로써 企業의 經營成果와 利潤의 社會的 配分을 꾀하는 중요한 機能을 가진 特殊會計이기도 한다.

그런데 租稅의 公正한 配分秩序를 확립하려면 會計理論과 經營理論을 원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理論의 必要性을 최초로 인식한 學者는 F. Findeisen으로서 그는 이미 1919年부터 租稅經營學(Steuer betriebslehre)을 주장하고 1923年에는 그의 著書 “企業과 租稅經營學”에서⁽⁴⁾ 企業에 대한 課稅와 企業의 國民經濟에 대한 作用 또는 反作用의 理論을 비판적으로

(4) F. Findeisen, Unternehmung und Steuer-Steuerbetriebslehre, Stuttgart, 1923,
Ewald Aufermann Grundzüge Betriebswirtschaftlicher Steuerlehre, Wiesbaden, 1959. S. 22.

검토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租稅負擔의 配分秩序를 形成하는 基本要因으로서 租稅負擔能力의 測定基準을 적정타당하게 確立할 必要性을 主張하였다.

稅務會計學의 學問的 使命은 租稅現象의 理論的 研究에 있으며, 課稅所得의 計算規定을 會計的 侧面에서 適正妥當性과 論理性을 檢토하여 公正한 稅務會計制度를 形成하는데 寄與하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稅務會計는 納稅者의 利益만을 옹호하여 租稅負擔을 輕減하는데 注力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稅務會計學의 本質은 政府의 國庫收入을 疏忽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租稅正義를 위하여 租稅逋脫을 피하고, 課稅의 公正한 實現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租稅의 配分秩序를 확립하는데 寄與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納稅者が 租稅에 대하여 올바른 觀念과 認識을 가지고 自進納付하는 租稅風土를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稅務會計學研究를 보다 하나의 獨立科學의 研究로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現實의 實定法을 중심으로 會計하는 方法을 해설할 것이 아니라, 法規가 租稅法律主義의 法律的 思想에 따라 알맞는 것인지, 課稅所得의 計算規定이 會計理論面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經營에 적합한 것인지에 관한 실질적이고 비판적인 研究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稅務會計學研究의 獨自性은 隣接科學인 財政學의 租稅論이나 稅法學과도 다르게 된다.

먼저 財政學 중에서 租稅論은 稅務會計學과 다루는 對象이 租稅現象이라는 점에서 共通의이다. 그러나 租稅論은 國家나 地方公共團體의 財源을 調達한다는 目的論의인 研究인데 대하여 稅務會計學은 個別經濟의 經營・經濟的 영향 요인으로서의 租稅를 個別經濟的 觀點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前者가 巨視的이라면, 後者は 微視的研究라는 點에 差異가 있다.

그리고 租稅法은 法學의 領域에 속하면서 租稅法規의 解釋, 適用에 대하여 法治國家의 인面에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研究하고, 租稅法規相互間이나, 다른 法規와 모순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主目的이다. 그러나 稅務會計學은 비록 稅法에 규정되어 있는 計算規定이긴 하지만 法學의in 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會計學의in 입장에서 검토하는 데 그 特色이 있다.

上述한 바와 같이 稅務會計學은 稅法學이나 租稅論과는 다른 獨自의인 研究課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III. 稅務會計學의 研究領域

稅務會計學의 學問的 體系를 展開하기 위해서는 研究理念과 아울러 研究體系 및 領域이

究明되어야 할 것이나, 대체로 우리나라나 外國의 경우를 보면 稅務會計의 研究方法은 ①稅務會計解明論, ②稅務會計原則研究論, ③稅務經營管理論의 研究論 등으로 區分하고 있다.

1. 稅務會計 解明論

稅務會計 解明論은 稅務會計 法規나 制度에 관한一般的이고 基本的인 說明으로서, 稅務會計原則研究나 稅務經營管理研究의前提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分野가 稅務會計의 全部처럼 생각되고 있으므로 다음에 이에 대한 檢討를 하고자 한다.

稅務會計 解明論은 租稅法規에 따라 課稅所得을 計算하는 稅務會計로서 實務的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研究分野에서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보다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稅務會計制度를 구체적으로 說明하려는 것으로, 法改正이 있을 때마다 이에 맞추어 說明을 바꾸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稅務會計의 研究는 稅務會計 解明論이 그 中心이 되고 있다. 물론 實踐的인 면에서는 稅務會計 解明論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理論的으로 發展시켜 나누어지는 것이 稅務會計原則研究와 稅務經營管理論이다. 前者를 稅務會計學에 대한 理念研究라고 한다면 後者는 企業經營에 있어서 租稅問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實踐的인 目標를 設定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稅務會計原則的研究

稅務會計原理論이라고도 하는 稅務會計原則研究는 課稅所得概念을 根本的으로 研究하고 課稅所得을 어떻게 適正妥當하게 計算하는가 하는 體系를 會計의妥當性과 經營·經濟의侧面에서 연구하여 보다 나은 稅務會計制度를 확립하려는 目標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本研究의 基本理念은 租稅를 社會正義의 實現道具로서 인정하고 個別經濟의租稅給付能力을 弊・ 측정하는데 適正妥當한 會計基準을 形成하고 確立하는데 寄與하고자 하는데 있다.

종래의 經濟學의租稅論에서 탈피한 “經營經濟의租稅論”을 쓴 E. Aufermann은 現行法律의 觀點과 財政의侧面에서 이용될 수 있는 經營形態로서의 消極的租稅主體(passive steuersubjekt)를 규정하고 租稅客體로서의 課稅標準을 확정하여 經營體의租稅抵抗의 反作用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그는 經營과租稅를 관련시켜 볼 때租稅는 原價要因으로서 또 利益分配要因으로서 參加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經營主體의立場에서 관찰하여 稅務會計의妥當性을 分析하고, 批判的인 研究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Ewald Auferman, Grundzüge Betriebswirtschaftlicher Steuer, Wiesbaden, 1959, S. 17.

이러한 論議는 後述하는 稅務會計의 管理論의 研究에도 상당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個別經濟의 입장에서 觀察하여야 한다는데 問題의 중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稅務經營管理論의 研究

稅務會計 原則論의 研究를 地域別로 나누어 볼 때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稅務會計 經營管理論의 研究는 美國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經營管理論의 研究는 稅控除後 純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하여 企業의 意思決定을 행하는데 租稅要因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稅務經營管理論의 研究課題는 租稅節約을 企業의 經營計劃에 도입하여 稅務經營計劃(Tax planning)을 세워 稅務上의 意思決定에도 經營管理的 研究(managerial approach)를 행하자는 것이다.

W. E. Dickerson은 그의 論文에서 企業의 意思決定에 있어서 租稅는 가장 중요한 要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우리나라나 外國의 대부분의 經營學者들이 租稅는 意思決定에서 주어진 與件으로 보아 고려사항에서 除外하는데 대해 Dickerson은 租稅負擔을 企業經營의 입장에서 分析・檢討하여 稅務經營政策을 수립하고 合理的이며 合法的으로 租稅를 節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아울러서 經營學徒들에게 稅務經營計劃에 관한 教育의有用性을 강조하였다.

한편, C. E. Johnson도 장래의 經營管理者에게 필수적인 것은 稅務經營管理論으로서 經營活動計劃을 통하여 租稅를 極少化(tax minimization)하는 연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論議는 우리로서는 뒤늦은 感이 있지만 이미 實務界에서는 이 見解의 實際的인 施行을 切感하고 있는 바로서 從來의 稅務會計가 事後의 球計處理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비추어 앞으로는 企業經營者的인 觀點에서 經營計劃과 經營管理(management control)의in各種 意思決定에 租稅要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分野의 研究는 우선 理論의 體系化問題 보다도 實務의 事前研究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IV. 企業會計原則의 尊重

課稅所得을 計算하는데 있어서는 益金의 總額에서 損金의 總額을 控除한다는 基本의規

(6) W. E. Dickerson, Tax planning and tax research in tax accounting courses, The Accounting Review, XXXII, 1957, Jan.

(7) C. E. Johnson, A course in income taxation for non-accounting majors? The Accounting Review XXXII, 1957, p. 90.

定이 있으나, ⁽⁸⁾ 우리나라 稅法의 基本法인 國稅基本的 第20條에는 다음과 같은 規定이 있다.

「國稅의 課稅標準을 調査・決定함에 있어서 당해 納稅義務者가 계속하여 適用하고 있는 企業會計의 基準 또는 慣行으로서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다만,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規定은 일단 課稅所得計算을 企業會計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公正・妥當한 會計原則”을 토대로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단지 同條文 後段에 있는 「다만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但書 規定은 稅法과 企業會計에 충돌이 생길 경우는 稅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企業利益에서 出發하여 稅法과 企業會計가 서로 相衝되는 項目을 調整하여 課稅所得을 計算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마찰 때문에 정상적인 企業會計制度를 운영하는데에는 많은 問題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勘案하여, 다음에 우리나라 國稅基本法 第20條의 意味를 美國이나 日本의 關係規定과 比較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1. 美國稅法에 있어서의 會計方法에 관한 規定

美國 内國稅法(Internal Revenue Code)은 1918年에 企業會計를 認識하고 納稅者가 정규적으로 採用하고 있는 會計方法에 따라 純所得을 決定할 것을 규정하였다.

同法 Sec. 41에는 「純所得은 納稅者가 채택한 會計年度에 納稅者가 정규적으로 채용한 會計方法에 따라 計算되어야 한다. 다만, 納稅者가 會計方法을 採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採用한 會計方法이 所得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監督官(commissioner)이 提示한 所得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計算方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⁹⁾ 이러한 一般規定(general rule)은 아주 자유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所得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會計方法이 무엇인가 하는데 問題가 있다. 이에 대하여 美國의 財務省 規定(Treasury Regulations)은 “모든 納稅者를 규제할 수 있는 劃一的인 會計方法은 없다. 納稅者는 自己判斷下에 自己에게 알맞는 會計方法을 채택하여야 한다.” ⁽¹⁰⁾고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稅法이 所得의 計算方法에 대하여 特定한 方法을 劃一的으로 強制하지 않고 있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어떤 會計方法을 採擇한다면 “繼續性의 原則”을 중요시하여 任意로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¹¹⁾ 또한 所得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會計方法을 거부할 權利

(8) 法人稅法 §9 ①

(9) U.S.A. Internal Revenue Code, Sec. 41.

(10) Treasury Regulations, Sec. 29, 41-3.

(11) Treasury Regulations, Sec. 29, 41-2.

를 國稅廳當局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美國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會計方法에 관한 一般原則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會計原則을 보다 重視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會計原則이 稅法을 支配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에 관하여 Surrey와 Warren은 “企業會計原則은 純所得을 決定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稅法上의 課稅所得이 企業의 純所得과 一致할 필요는 없다. 稅法上의 控除나 一定한 制限은 租稅政策上 必要하다”고 주장하여⁽¹²⁾ 課稅所得의 算定을 위해서는一般的으로 인정된 會計原則의 基調위에서 稅務會計를 展開한다는 相對的 依存關係를 설명하고 있다.

2. 日本稅法에 있어서의 會計方法에 관한 規定

日本에 있어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會計處理基準”이 문제가 된 것은 1967年 稅法을 改正하면서부터이다. 즉, 法人稅所得計算의 基本規定으로서 “會計慣行을 重視하는 취지의 所得計算의 基本規定을 創設하였던 것이다.⁽¹³⁾ 이것은 稅務會計가 公正妥當한 企業會計原則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한 規定으로서 의미가 큰 것이었다.

여기에서 日本 稅務當局者들이 생각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된 會計處理의 基準”이란 日本 企業會計審議會가 制定한 企業會計原則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企業會計審議會에서 작성한 企業會計原則은 “企業會計의 實務 중에서 慣習으로 발달된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된 것을 要約한 것”이라는 主張이 있지만,⁽¹⁴⁾ 稅法에서는 단지 課稅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企業會計를 尊重한다는 것을 表明했을 뿐이고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된 會計處理基準의 內容은 「客觀的이고 規範性을 가진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된 會計處理의 基準으로서, 現在는 그 內容에서 구체적인 基準을 밝히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事例나 例規通牒으로서 이를 밝히면서 계속 再檢討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¹⁵⁾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會計方法에 관한 規定

우리나라는 國稅基本法에서 會計原則의 尊重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會計原則을 이미 制定 公表된 企業會計原則이나 商法上의 株式會社 計算規定으로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商法과 企業會計原則 사이에는 差異가 많으며, 商法을 조만간 改正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 S. S. Survey and W. C. Warren, Federal Income Taxation—Cases and material, 1955, pp. 420-421.

(13) 日本法人稅法 § 22 ④, 清水延晏「法人稅法의 一部 改正에 관하여」, 稅經通信, 第22卷 第8號, p. 99.

(14) 日本 企業會計審議會, 『企業會計原則』, 二 : 1

(15) 西原宏一「法人稅法의 改正」, 稅務弘報, 第15卷 第8號 p. 75.

그러나 이러한 差異가 解消되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一般的으로 認定된 公正妥當한” 企業會計原則의 앞에 붙은 修飾語이다. 우리나라에서도 過去 1958年에 企業會計準則制定分科委員會에서 制定公表한 企業會計原則은 1976년까지 계속 变함이 없었으나 法人稅法은 1968年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12回, 所得稅法은 同期間 중 15回의 大小 改正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계속 發表되는 例規通牒이나 國稅審判所의 判例 등은 오히려 企業會計原則의 不充分함을 補充해 주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日本과 같이 企業會計原則 尊重에 대한 立法趣旨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日本이나 美國에서 쓰고 있는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generally accepted) 수식어를 앞에 붙인 理由는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會計原則이 이미 公表된 企業會計原則 보다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國稅基本法 第20條의 但書도 美國이나 日本의 該當法規와 같이 企業의 會計方法에 대하여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음을 表現함과 아울러 稅務官廳의 包括的인 授權을 가졌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法條文의 性格과 같이 일단 稅務會計는 企業會計原則의 基調 위에서 調整되고, 이에 依存한다는 說明은 但書 보다 계속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稅務當局은 租稅를 最大로 確保하고, 아울러 早期에 確保하려고 努力하지만, 한편으로는 納稅者的 財務上의 自由를 保障할 義務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V. 課稅所得의 概念

일반적으로 課稅所得은 所得에 대한 課稅를 하기 위한 納稅者的의 課稅標準으로서의 所得을 의미한다. 課稅所得은 企業利益과 對應된 概念으로서 租稅目的에 따라 納稅者에게 부담시킬 配分基準으로서 이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課稅所得의 計算은 租稅負擔能力의 測定을 통해 租稅當局과 納稅者的의 理解를 조정하고, 租稅負擔의 公正한 配分을 피하는 중요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稅務會計學의 研究理念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課稅所得概念의 研究는 根本的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課稅所得概念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지만 그 概念設定의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解明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所得이라는 概念 自體가 經濟學的, 會計學的, 法律學的으로 각 學問領域別로 特色있게 發展되어 왔기 때문이다.

課稅所得概念의 設定에 있어서 所得에 관한 問題는 다음의 세 가지로 分類될 수 있다⁽¹⁶⁾

(16) E. N. Griswold, Cases and materials on federal income taxation, 4ed., 1955. p. 135.

- ① 무엇이所得인가? (What is income?)
- ② 누구의所得인가? (Whose income is it?)
- ③ 언제所得이 되었는가? (When is it income?)

이러한 문제를解明하기 위한一環으로 다음에所得에대한歷史的概念發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獨逸에 있어서의所得概念의發展

租稅史의面에서所得稅의歷史가 가장 오래된國家는英國이지만,所得이무엇인가에대한研究의嚆矢는獨逸學者 F.B.W. Hermann이최초로“國家經濟研究”에서發表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¹⁷⁾ 그는所得이란個人의收入중에서資本의蓄積을損傷함이없이消費할수있는部分을뜻한다고하고,消費에충당할수있는income의規則性과資本의維持를所得의屬性으로보았다. 이러한見解는 Gustave von Schmoller의支持를받았고,한편Adolf Wagner는規則的으로流入되는所得外에財產의계속적使用으로얻어지는經濟的價值도所得에包含시켜概念을擴張시키고있다. 이러한消費基金說(Konsumptionsfondstheorie)에대하여生產力의concept을導入한 H. L. Biersack, W. Roscher, W. Vocke, G.V. Schanz 등諸學者는所得은價值生產的,經濟的遂行에서發生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Vocke는“收益과所得의本質의in 것은移轉되는것이아니라항상새로이形成되는것이다.贈與,當籤金,遺產등은收益이아니며,따라서所得일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¹⁸⁾

個人所得은國民所得에대한各個人의몫이라고주장한 A. Held는一次的所得과傳來的所得을구별하였고,이에이어F. Guth는法的關係의區別基準을만들어所得이란特定의源泉에서一定한規則性을띠고流入되는經濟力의增加이다.所得을얻는者는그所得을,富의蓄積을損傷함이없이享有・消費또는損壞할수있다.이리하여射倅의收入이나施惠나受贈은所得이아니다. 다만이러한施惠나贈與에대해서受惠者가어떤請求의根據를가지고있을때에는所得”이라고설명하고있다.⁽¹⁹⁾

이러한所得定義의制限性에대해批判을加하면서지금까지所得概念의通說로되어있는純資產增加法을주장한것은G. V. Schanz이다.

그는所得이란“一定期間에있어서의富의純增加分(Reinvermögenszugang eines bestimmten zeitabschnitts)”이라고주장하였다.⁽²⁰⁾

(17) 李泰魯「課稅所得의概念에관한研究」, 1975. p. 8.

(18) 上揭書, p. 10, Vocke, Die Grundzuge der Finanzwissenschaft p. 278. et. Seq. (1894).

(19) 上揭書, p. 11, F. Guth, Die Lehre von Einkommen in dessen Gesamtzweigen, p. 62. (1878).

(20) 上揭書, p. 14, G. V. Schanz, “Der Einkommensbegriff und die Einkommensteuergesetz”, Finanz Archiv, pp. 1-30 (1896).

이러한 Schanz의 見解는 당시까지 주장해 오던 源泉維持說에 있어서 源泉의 概念 模糊性을 회피하면서 당시 獨逸政府의 膨脹하는 財政需要에 부응한 所得概念을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英美에 있어서의 所有概念의 發展

美國에 있어서의 所得概念에 관한 研究는 19世紀 유럽의 研究를 받아 들여 初期에는 源泉理論이 支配하였다. E. Seligmann은 “所得을 一定期間에 流入되어 資本을 損傷시킴이 없이 消費의 目的으로 處分할 수 있는 富의 價額”이라고 定義하고, 金錢所得 外에 現저하고 용이하게 評價될 수 있는 心理的 所得도 所得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²¹⁾

이어 株式配當에 대하여 課稅를 할 것인가에 대한 論爭으로 유명한 Eisner와 Macomber事件에서 Seligman은 富의 概念을 效用과 씨어비스로 정의하고, 效用은 만족으로 나타나며, 만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所得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R. M. Haig는 所得은 두 時點사이의 經濟力의 純增加分으로서 貨幣價值로 評價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²²⁾ 이러한 定義는 獨逸의 Schanz의 정의와 거의 같고, H. C. Simon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現代에 있어서의 所得概念은 純資產增加說로歸着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1930年에 Irving Fisher는 所得을 心理的으로 해석하여 消費로 表現되는 滿足感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울러 所得 모델 중에서一般的으로 알려진 全體所得은 消費와 賯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Fisher는 賯蓄은 滿足을 後日로 연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賯蓄을 控除하면 所得은 消費와 一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²³⁾

이 概念은 後日 他學者들에 의하여 處分型 所得概念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個人이 所得을 創出하는 源泉의 財產에 課稅할 것이 아니라 消費하는 所得部分에 대해서만 課稅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우리나라와 같이 資本蓄積이 不足한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賯蓄을 “社會的 善”이라고 보는 概念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으나 이러한 概念은 所得의 均衡問題와 社會政策上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는 없다. 따라서, 個人所得稅를 전면적으로 消費稅로代替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후에 美國의 N. Kaldor는 消費와 支出을 구별하고 支出稅를 보다 體系的으로 發

(21) E. Seligman, The Income Tax, 1914, p.19.

(22) R. Haig, The concept of Income-Economic and Legal Aspects, Readings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1959, pp.59-70.

(23) I. Fisher, The theory of interest as determined by impatience to spend income and opportunity to invest it. 1930. p.4.

展시켜, 1年間의 支出統計에 대한 統合 課稅制度를 擇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러한 支出稅의 長點은 賯蓄을 強調함으로써 資本蓄積에 도움이 되고, 高所得層에 대하여 課稅를 賦課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그러나 單一한 稅金을 가지고 여러가지 目的을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것은 實體적으로 어려우며, 所得에 대한 概念設定이 모호한 것도 여러가지 意義를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定義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3. 課稅所得의 概念

稅務會計의 課稅所得은 基本의 으로 資本의 追加의 出資와 引出, 所得의 處分을 除外하고, 두 時點間에 있어서의 모든 源泉으로부터 생기는 經濟力 實現의 純增加額으로서 貨幣的 單位로 測定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課稅所得 定義의 特徵을 다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⁴⁾

(1) 納稅實體의 設定

課稅를 하는데 있어서의 基礎의 前提는 納稅實體와 課稅關係를 명확하게 設定한다는데 있다. 會計學의 基本前提가 企業實體인 것과 마찬가지로 稅務會計上에 있어서도 納稅實體가 기본적인 前提가 된다. 所得課稅의 目的是 所得을 實質的으로 얻는 主體를 納稅主體로 하여 能力負擔의 原則대로 租稅를 徵收하는 데 있다. 法人企業에 所得課稅를 하는데 있어서 納稅實體는 法人으로 獨立되어 있으므로 法人實體를 구성하는 個人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納稅義務가 없는 것같이 생각되나, 法人的 利益이 그대로 法人의 構成員인 個人에게 돌아간다면 問題는 다르다. 이 問題를 더 發展시켜 생각하면 租稅負擔公平의 原則을 준거해서 課稅의 不公平을 除去하고, 稅制의 中立性을 겸지하려면 法人企業은 個人 또는 家族企業(閉鎖企業)과 公開企業을 명백히 區分하여, 이들의 社會的 機能의 差異에 따라 實態에 相應하는 課稅方式을 導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法人稅法에 있어서 公開企業에 대한 優待稅率 및 各種 優待措置는 法人企業의 平等性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期間的 概念

課稅는 定期的으로 행해지는 경우와 納稅할 事項이 생겼을 때 隨時로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課稅所得은 所得인 이상 어느 時點으로부터 어느 時點까지의 期間에 發生한 所得을 대상으로 한다. 이 期間은 會計學의 概念을 이용하여 “會計期間”을 前提로 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貨幣的 測定

課稅所得은 貨幣的 單位로 測定이 可能하여야 된다. 이것은 會計學의 概念에 있어서의

(24) 富岡幸雄『稅務會計總論』, 森山書房, p.71.

貨幣的 評價의 公準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만약 貨幣的인 評價가 可能하지 않다면 課稅所得으로 把握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所得을 貨幣로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은 價值概念을 明確하게 하는 것으로서 後述하는 純所得概念과 連結시킬 수가 있다. 만약 貨幣單位로 평가할 수 없다면 純增加額을 表示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4) 모든 源泉으로부터 얻은 經濟力의 純增加額

稅務會計原則의in 面에서 納稅者에게 租稅負擔을 公平하게 配分實現하는 基準을 實現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經濟的 實態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여 課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所得源泉說에 따르면 所得은 일정한 源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發生한 收入으로서 定義되는 데 課稅所得은 비록 一時的인 所得이라 할지라도 課稅對象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說明은 個別經濟의 實質的인 擔稅力이 늘어났을 경우에 이에 對應시켜 課稅한다는 能力負擔說에 符合되는 것이다.

(5) 實現純增加額

비록 모든 源泉으로 부터의 얻은 經濟力의 純增加額이라 하더라도 實現되지 않은 所得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것은 주상적인 純增加額이라는 概念을 보다 明確하게 규제하려는 의도로서 會計學의in 概念을 원용한 것이다. 個別經濟인 納稅主體에게 있어서 實現되지 않은 收益에 대해서 課稅당한다는 것은 租稅負擔能力과 支給能力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實現所得의 概念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徵稅上의 便宜를 보다 考慮에 넣는 경우도 없지 않다.

(6) 純所得 概念

純所得은 두 時點間에 있어서 經濟力이 實現된 純增加額은 서로 控除함으로써 把握되는 것으로서 總收入金額에서 必要經費를 控除한 差額으로 나타난다. 물론 稅務會計의in 側面에서 이러한 稅務計算에 個別納稅者의 主觀的인 判斷을 除去하고 客觀的이고도 明確한 計算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計算規程을 稅法은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損金許容限度를 규제하여 租稅負擔을 能力에 따라 公平하게 부담시킬 수 있는 政策的 配慮를 하고 있다.

(7) 資本의 追加的 出資와 所得 處分

一定期間에 있어서 모든 源泉으로부터 얻어진 經濟力의 純實現增加額을 所得이라고 주장하는 概念을 課稅所得으로 定義한다고 할 때, 우선 資本의 追加的인 出資는 所得을 實現하기 위하여 原初的인 出資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課稅한다는 것은 곧 資本蠶食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所得의 處分은 이미 前期에 納稅하고 남은 殘餘分에 대

해서 事後的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이에 課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8) 租稅負擔의 公平한 配分基準

課稅所得을 計算하는데 있어서의 理想은 租稅負擔을 納稅者의 能力에 따라 公平하게 配分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公平性은 租稅論의 基本前提이다. 따라서, 課稅所得은 個別納稅者의 慷意的인 計算을 排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稅法은 捐金許容限度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公平配分基準에 따른 課稅所得概念을 形成하는 몇 가지 原則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實質課稅主義의 原則

課稅所得의 歸屬者를 決定하고, 課稅所得을 計算測定하기 위하여 表面的인 事實보다는 經濟的 實態에 따른 決定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 實質所得者課稅, 實質所得把握, 租稅迴避否認 등이 나오게 되었다.

② 納稅者 任意計算 排除의 原則

課稅所得을 計算하는데 있어서 비록 納稅者가 自進申告納付를 한다 하더라도 租稅負擔의 公平을 위하여 個別納稅者의 主觀的인 判斷으로 任意計算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原則에 따라 會計方法의 繼續性, 會計方法의 一貫性, 重要性, 判斷의 規制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③ 捐金控除規制의 原則

租稅負擔의 公平을 위하여 益金에서 控除하는 捐金을 企業이 요구하는 그대로 認定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稅法은 捐金許容을 대폭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企業會計上의 事業經費 중 捐金으로 認定하여 주지 않는 것과 寄附接待費의 限度 設定, 充當金의 許容額 規制, 減價償却의 是否認 등을 調整計算에서 행하게 된다.

(9) 租稅負擔能力의 指標

만약, 課稅所得이 納稅者의 負擔을 公平하게 配分할 수 있는 計算을 한 후 결정되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能力指標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所得의 發生原因과 그 實態, 性格, 所得의 處分 可能性을 조사한 후에 課稅所得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資本去來에 의한 增減은 排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思考에서 나온 稅務會計의 原則이 負擔能力主義의 原則과 資本剩餘金 課稅除外의 原則이다.

(10) 稅務行政上의 考慮

稅務行政上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納稅者의 便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納稅者가 所得을 計算하는 技術的인 節次가 복잡해서는 안되고 簡素하고, 理解하기 쉽게 하여야 하며, 客觀的으로 明確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考에서 나온 原則이 計算基準明確性의 原則과 計算簡便性的 原則이다.

이들 原則은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 있다. 더욱기 國民의一般的知識水準을 넘는 課稅所得計算과 稅務行政上의 便宜에 重點을 두는 徵稅方法에 問題點이 없는 것도 아니다.

(11) 會計制度에의 依存

租稅制度는 社會現象의으로는 獨自의이지만 또 다른 社會的 制度인 會計制度와는 制度의 依存關係를 가지고 있다. 所得을 計算한다는 思考는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단지 所得을 計算하는 目的만이 다르기 때문에 兩制度는 서로 依存關係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前章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國稅基本法 第20條에 “一般的으로 公正妥當 하다고 認定된 企業會計原則을 尊重”한다는 規定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12) 社會・經濟 政策의 考慮

租稅의 機能은 財政의 歲入調達 이외에도 經濟成長이나 公正한 所得 再配分의 經濟的 機能을 수행하고, 社會政策的 機能도 수행하게 된다. 國民經濟의面에서 보아 政府가 成長하기를 바라는 業種에 대해서는 稅制上 差別의 利益을 제공하고, 各種 誘因을 제공하여 刺激措置를 행하게 된다. 租稅政策의 運營이 理想的으로 되면 短期的으로는 景氣變動을調整하고 長期的으로는 經濟成長을 촉진하게 되는데, 稅制를 經濟政策의 目的에서 利用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과 效果를 比較・檢討하고, 다른 政策과의 關係를 考慮하여야 한다. 어떤 業種에 대해 租稅減免을 하는 경우 이 業種을 保護育成하는데 있어서 初期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特權化하거나 慢性化하면 오히려 國際競爭力を 鈍化시킬 憂慮도 있다.

租稅의 社會・公共政策的 機能은, 政府가 一般國民에게 普及 내지 育成하기 위한 社會活動이나 特定政策에 대해서는 필요한 諸經費를 損金으로 認定해 주거나 納付하여야 할 稅金에서 控除해 주고, 반대로 政府가 抑制하고 싶은 分野에 대해서는 稅金을 높이거나 經費를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아, 事實上 이러한 行動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上述한 諸要因이 企業會計上の 企業利益概念과 稅務會計上の 課稅所得概念과의 差異를 가져오게 하는 理由가 되는 것이다.

4. 課稅所得과 企業利益과의 關係

前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稅務會計는 企業이 保有하고 있는 유일하고 信賴性있는 會計記錄을 基礎로 하여 課稅所得을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 企業會計와 稅務會計는 同一한

事實關係를 대상으로 놓고, 前者は 納稅者의 財產狀態와 營業成績을 적정하게 認識・測定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後者は 課稅事實을 認識・測定하고자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思考가 생기게 되어, 稅務會計는 企業會計에 “調整”이라는 依存性을 보이게 되지만 計算結果는 서로 다르게 된다.

이를 式으로 說明하면 課稅所得과 企業利益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text{課稅所得} = \text{益金} - \text{損金}$$

$$\text{企業利益} = \text{收益} - \text{費用}$$

이 두 式에서 益金=收益, 損金=費用이라는 等式이 成立한다면 稅務會計上의 課稅所得이나 企業利益은 一致하게 된다. 그러나 問題는 이들이 서로 一致하지 않고, 企業會計는 保守主義原則을 적용하여 收益은 實現主義로 費用은 發生主義로 處理하게 되는데 대하여, 稅務會計는 이를 모두에게 權利義務確定主義原則에 따라 發生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企業會計上으로는 收益이나 費用으로 인정되는 것이 稅務會計에 있어서는 益金不算入項目이나 損金不算入項目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대체로 益金은 收益에 비해 過大計上되고, 費用은 劃一主義의 原則 등의 이유로 規制되어 損金이 過小計上된다. 그러므로 결국 收益 < 益金, 損金 < 費用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다시 表現하면, 收益 - 費用 < 益金 - 損金으로 되어 課稅所得이 企業利益보다 많다. 이것은 稅務會計가 租稅最大確保主義와 租稅早期確保主義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會計學會의 會計原則委員會는 “會計原則에 관한 意見書”에서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差異가 나타나는 原因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區別하고 있다. ⁽²⁵⁾

① 規定上의 差異 (differences of specifications)

租稅立法上의 이유 때문에 各種 所得을 減免하고, 經濟政策上의 이유 때문에 財政收入의 增大를 目的으로 各種 損金의 算入을 억제하고, 制限하게 되어 差異가 생기게 된다.

② 時點의 差異 (differences of timing)

收益認識의 時期 또는 損金算入의 時期가 企業會計原則과 달라 差異가 생기게 된다.

日本의 “稅法調整意見書”는 企業利益과 課稅所得의 差異의 原因으로서 다음의 6가지를 說明하고 있다. ⁽²⁶⁾

① 企業會計上의 所得에 대한 稅法上의 免稅(非課稅所得)

(25) AAA. Committee on concepts and standards underly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ing principles and taxable income, supplementary statement No. 4, 1952.

(26) 日本 企業會計基準審議「稅法과 企業會計原則과의 調整에 관한 意見書」, 總論, 企業會計, 第4卷 13號.

企業의 損益計算으로는 總收益을 구성하는 要素이나 租稅政策上의 이유로 課稅를 免除하고 있다.

② 所得이 아닌 것에 대한 財政上의 課稅(盈金算入)

企業의 損益計算으로는 總收益에 計上하지 않는 것을 稅法上으로는 課稅對象으로 한다.

③ 收益의 認識時點 差異

收益의 歸屬年度에 관한 判斷을 하는데 있어서 企業會計에서는 今年에 発生은 하였으나 實現되지 아니한 利益은 다음 會計年度의 收益項目으로 移延하는데 비하여 稅務會計에서는 이번 會計年度에 포함시킨다는 解釋이 成立되는 것과 같이 計算歸屬期間에 있어서 差異가 생긴다.

④ 損金控除의 稅務上 否認(損金不算入)

企業目的을 위하여 인정되는 費用項目을 租稅目的上 費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差異가 생긴다.

⑤ 企業會計上 費用이 아닌데도 租稅政策上 費用으로 是認하는 경우

企業目的上 費用을 구성하지 않는데도 不拘하고, 稅務會計에서는 總收益으로부터 控除하는 것을 是認하는 경우가 있다.

⑥ 費用認識의 時點 差異(歸屬期間 差異)

費用負擔의 歸屬年度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上의 差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說明들은 美國 會計學會의 見解나 日本의 稅法調整意見書의 内容이 서로 같다 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데, 日本의 渡邊進教授는 企業會計原則과 稅務會計上의 差異를 形態別로 區分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²⁷⁾

① 金額的 差異(量的 差異)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에 있어서 收益과 費用을 認識하는 경우에 兩者間에 收益과 費用으로 認識된 金額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② 期間的 差異(時間的 差異)

收益과 費用의 歸屬期間이 서로 相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歸屬期間의 差異를 區分하여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i). 企業會計가 稅務會計 보다 빠르게 收益의 歸屬年度를 決定하는 경우

(ii). 企業會計가 稅務會計 보다 빠르게 費用의 歸屬年度를 決定하는 경우

(iii). 稅務會計가 企業會計 보다 빠르게 收益의 歸屬年度를 決定하는 경우

(27) 渡邊進「法人稅法에 관한 몇 가지 問題」會計, 第60卷 第1號

(iv). 稅務會計가 企業會計 보다 빠르게 費用의 歸屬年度를 決定하는 경우

그러나 우리나라 稅法에서 살펴볼 때 위의 네 가지 類型 중 (i)과 (iv)의 경우는 比較的 찾기 어려운 類型이다.

③ 性質的 差異(質的 差異)

收益과 費用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本質的으로 다르게 判定하여 생기게 되는 差異가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機關과 學者들의 見解에도 불구하고, 通說은 稅務會計와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에 대한 依存關係는 밀접하며, 이러한 段階의 依存關係의 强弱이나 形態를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²⁸⁾

① 承 繼

會計原則을 租稅目的의 計算領域에 있어서 그대로 承繼하는 것으로서 會計原則에 준거하면서, 租稅目的에 적응한 課稅所得을 計算한다.

② 修 正

基本的으로 企業會計原則을 基調로 하고 있으나 租稅目的上 會計原則을 그대로 承繼하는 것은 아니다. 租稅目的에서 볼 때 規制 내지는 調整的 修正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會計原則이 抽象的인 規定을 하였을 때 稅務上으로는 이를 具體的인 內容으로 修正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 補 充

會計原則上으로 明白하게 规정하지 않은 項目이 있다면, 그 理由는 會計原則을 實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彈力性과 伸縮性의 幅을 擴大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租稅目的에 있어서는 企業에 부여된 彈力性이나 企業會計의 自主性을 인정하기 때문에 規制 내지는 調整的 措置로 補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會計原則의 內容이 “白地原則”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具體的이고도 明確한 措置를 稅法 은 规정하고 있는 것이다.

④ 強 調

會計原則에서도 인정되는 것이지만 稅務上 이를 보다 強調하여 適用시키는 것으로서 社會政策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특히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創 設

會計原則上 그 內容이 명확하지 않거나 無規定의 狀態로 放置하여 企業이 任意대로 결정

(28) 富國幸雄 前揭書, pp. 110-113.

하게 할 경우 租稅目的上 많은 問題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稅務會計에서는 이에 대하여理論的根據를 提示하여 이에 관한 對策을 결정하고, 計算的規制를 稅法에 신설하게 된다.

⑥ 選 擇

會計理論上으로 對立되는 見解가 있는 경우에 會計原則을 實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相異한 解釋을 하게 되는데, 租稅目的上에서 살펴볼 때 이렇게 대립되는 見解를 그대로 許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檢討하여 取捨選擇하게 함으로써 計算規定을 明確하게 한다.

⑦ 特 設

會計原則에서는 考慮하지 않고 있는 事項에 대하여 租稅目的上 計算的規制를 特別히 設置하는 사항으로서, 이러한 規定의 會計思考는 稅務會計의 特徵的理論을 구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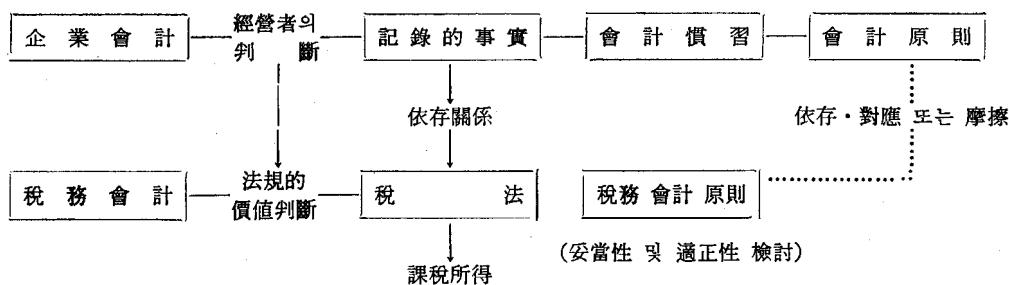
⑧ 排 除

會計原則에서는 인정되는 會計思考이지만, 租稅目的上의 計算理念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排除하는 規制 내지는 調整의措置를 設定하여 會計原則의 內容을 排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事項들 때문에 비록 稅務會計가 企業會計에 段階的으로 依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差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企業會計의 基本的인 目的에 추가하여, 行政上의 要請, 經濟政策的, 社會政策的, 租稅政策的 目的을 추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1.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關係



VII. 課稅所得의 計算構造

우리나라 法人稅法上 課稅所得은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益金의 總額에서 그 事業年度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損金의 總額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²⁹⁾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所得稅法에서도 보이는데 “事業所得金額은 當該年度의 總收入金額에서 이에 所要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고 규정하여⁽³⁰⁾, 益金總額 또는 總收入金額에서 損金總額 또는 必要經費를 공제하여 所得金額을 算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條文들은 課稅所得計算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인 計算條項이라고 할 것이다. 稅法上 益金과 損金의 概念은 事業年度를 초월하는 概念이므로 期間의 限定이 필요하며, 期間의 限定을 받는 益金과 損金이 課稅所得의 計算構造를 形成하게 된다.

1. 益 金

稅法上 “益金”이라 함은 資本 또는 出資의 納入 및 法人稅法에서 規定하는 것을 除外하고, 그 法人の 純資產을 增加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발생하는 收益의 金額을 말한다.⁽³¹⁾

會計學上 收益이 “財貨의 生產, 引渡 및 用役의 提供結果로서의 企業의 純資產의 增加”⁽³²⁾라는 概念을 생각해 볼 때 企業이 收益을 生產한다고 보고, 그 밖에 “資產의 賣却 또는 交換으로부터 나타나는 利得, 投資로부터 얻은 利子 및 配當, 資本轉出 및 資本修正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除外하고”라는 概念을 稅法上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³⁾

그러나, 이와 같이 本質적으로 收益과 益金이 같다고 볼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實際로는 前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內容이 다르다. 그 理由는 課稅所得計算上 益金算入項目과 益金不算入項目이 별도로 规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法人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收益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⁴⁾

- ① 商品의 賣買, 製品의 製造 販賣, 씨어비스의 收入金額 등 法人固有의 收益
- ② 資產의 讓渡金額
- ③ 資產의 貸貸料
- ④ 資產의 評價差益
- ⑤ 無償으로 받은 資產에 대한 受贈利益
- ⑥ 債務의 免除, 消滅로 인하여 생기는 收益
- ⑦ 支出된 損金 중 還入된 金額

(29) 法人稅法 第9條①

(30) 所得稅法 第20條②

(31) 法人稅法 第9條②, 日本 法人稅基本通牒 第51(1974)에서도 우리나라 法人稅法과 같은 내용으로 “益金”이라 함은 法令에 별도로 정한 것을 除外하고는 資本 등 去來 이외의 去來로서, 純資產增加의 原因으로 발생된 一切의 事實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32) R. T. Sprouse, M. Moonitz, “a Tentative Set of Broad Accounting Principles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Research Study No. 3, AICPA 1962 p. 46.

(33) AICPA, Accounting Research and Terminology Bulletins, New York, 1961, p. 34.

(34) 法人稅法施行令 第12條

⑧ 利益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 捐金으로 計上된 積立金額

⑨ 前各號外의 收益으로서 그 法人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金額

이와 같이 우리나라 稅法의 경우는 列舉主義를 채택하고, 純資產의 增加라는 모든 項目을 열거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⑨項에 “前各號外”라는 表現에 의하여 나머지 事項을 包括시켰지만, 企業收益을 分類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①項에 事業本來의 收益만을 열거할 것이 아니고, 有價證券에 대한 投資收益, 貸金・預金과 같이 資金運用에서 생기는 收益, 受入賠償金이나 受入保證金 등과 같이 보통 발생하지 않은 特殊收益 등으로 區分 列舉하는 것이 會計理論上으로나 體系上 도움이 될 것이다.

盈金不算入項目은 會計理論上 收益임에도 不拘하고,前述한 資本去來를 제외한다는 趣旨에 따라 課稅所得 計算上 當該事業年度의 盈金에 算入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法人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內容은 다음과 같다.⁽³⁵⁾

① 株式發行額面超過額

② 減資差益

③ 合併差益

④ 移越益金

⑤ 資產再評價差額

⑥ 納付한 稅金의 還給分

⑦ 過誤納稅金의 還付金의 利子

⑧ 附加價值稅의 賣出稅額

여기에서 ⑥, ⑦項의 還付金과 ⑧項을 除外하면 나머지는 典型的인 資本去來에 의한 結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⑥項의 還給金은 當初에 支給한 法人稅와 住民稅가 捐金으로 認定받지 못하게 됨으로 이에 對應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 盈金算入項目은 法人稅法上 다른 非課稅所得이나 免除所得, 捐金算入項目 등과 같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法人稅法의 內容 중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擾制는⁽³⁶⁾ 실제로 配當받지 않은 경우에도 利益配當이나 剩餘金을 分配받은 것으로 看做되므로 盈金에 算入하여야 한다. 그리고 出資者 등에게 無償으로 金錢을 貸與한 경우에 當座貸越利子로 認定하여 利子相當額을 盈金에 算入한다는 認定利子의 計算規定⁽³⁷⁾도 盈金算入項目의 하나가 된다.

(35) 法人稅法 第15條

(36) 法人稅法 第19條

(37) 法人稅法施行令 第47條

비록項目이 적기는 하지만, 이러한 益金算入項目의 設定意義는 企業會計의 立場에서는 收益이 아니라 할지라도 不當하게 收益을 減少시킬 目的으로 惡用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益金의 稅法上 規定內容을 分析해 보면, 어느 事業年度에 있어서 益金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企業會計上의 收益 + 益金算入項目 - 益金不算人項目 = 益金決定總額이라는 算式이 成立됨을 알 수 있다.

2. 損 金

稅法上 “損金”이라 함은 資本 또는 持分의 還給, 剩餘金의 處分 및 法人稅法에서 정하는 것을 除外하고, 그 法人の 純資產을 減少시키는 去來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費의 金額을 말한다. ⁽³⁸⁾

會計學上 費用은 收益을 獲得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財貨나 用役의 使用 또는 消費를 의미한다고 볼 때, 收益과 對應하여 費用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稅法은 費用의 概念을 過程의 結果로서 純資產의 減少에 두고 있는 바, 이것은 R. T. Sprouse나 M. Moonitz의 見解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費用을 “收益을 創造하는데 있어서 經濟的 用役의 使用 및 政府單位에 의해 課稅된 結果로서의 純財產의 減少라고 정의하고 있다.

稅務會計가 納稅者의 課稅事實을 認識하여 課稅하기 위한 會計라고 할 때, 이러한 見解는 妥當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結果로서 나타난 費用의 認識 뿐만 아니라 收益과 對應過程에서 消滅되어 버리거나 喪失된 原價도 把握 計上되어야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認識 測定할 것이냐 하는 會計技術上의 문제가 따른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法人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損金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³⁹⁾

- ① 讓渡資產의 讓渡當時의 帳簿價額
- ② 販賣商品이나 製品에 대한 原料買入價額
- ③ 人件費
- ④ 固定資產의 修繕費, 減價償却費
- ⑤ 貸借料
- ⑥ 借入金利子

(38) 法人稅法 第9條③

(39) 法人稅法施行令 第12條②

- ⑦ 貸損金
- ⑧ 在庫資產의 評價差損
- ⑨ 諸稅公課金
- ⑩ 海外市場開拓費
- ⑪ 採礦費
- ⑫ 無料診療券에 의한 無料診療價額
- ⑬ 業務와 관련 있는 海外視察訓練費
- ⑭ 勤勞青少年을 위한 中高校의 運營費
- ⑮ 法人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金額

이상의 内容을 살펴보면 商品이나 製品의 賣出原價, 販賣費, 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 이構成內容을 이루고 있으나, 새로 追加되는 規定이 계속 늘어나 無秩序하게 配列되고 項目比重의 輕重도 無視되어 있다.

한편, 稅法은 위의 損費項目외에도 租稅政策, 經濟政策, 社會政策上 각종의 項目을 損金에 算入하거나 또는 不算入하고 있다.

우리나라 法人稅法에 列舉되어 있는 損金算入項目은 다음과 같다.

- ① 保險業法의 責任準備金과 特別準備金 및 銀行業法에 규정된 準備金⁽⁴⁰⁾
- ② 海外市場開拓準備金⁽⁴¹⁾
- ③ 證券去來準備金⁽⁴²⁾
- ④ 輸出損失準備金⁽⁴³⁾
- ⑤ 海外投資損失準備金⁽⁴⁴⁾
- ⑥ 採礦準備金⁽⁴⁵⁾
- ⑦ 價格變動準備金⁽⁴⁶⁾
- ⑧ 中小企業施設改替準備金⁽⁴⁷⁾
- ⑨ 特別修繕充當金⁽⁴⁸⁾

(40) 法人稅法 第12條

(41) 法人稅法 第12條의 2

(42) 法人稅法 第12條의 3

(43) 法人稅法 第12條의 4

(44) 法人稅法 第12條의 5

(45) 法人稅法 第12條의 6

(46) 法人稅法 第12條의 7

(47) 法人稅法 第12條의 8

(48) 法人稅法 第12條의 9

⑩ 退職給與充當金⁽⁴⁹⁾

⑪ 貸損充當金⁽⁵⁰⁾

⑫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產⁽⁵¹⁾

⑬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產⁽⁵²⁾

⑭ 國庫補助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產⁽⁵³⁾

이상 14種의 損金算入項目 중 銀行, 保險會社, 證券會社 등 特殊한 法人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3種, 貿易業을 대상으로 한 것이 1種이고, 나머지가 一般企業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一般化될 수 있는 것은 退職給與充當金과 貸損充當金 정도로서, 이들은 이미 企業會計에서는 損費處理하고 있는 것이지만 稅法上으로는 오히려 그範圍를 制限하고 있다.

参考로 美國 聯邦所得稅를 살펴 보면,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 事業經費의 要件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① 當該 事業年度에 支出하였거나 또는 負擔한 事業上의 經費

② 納稅者의 事業에 直接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그에 속하는 經費

③ 事業經營上 通常의 이거나 必要한 經費

④ 資本의 支出이 아닌 收益的 支出로 認定된 經費

이러한 内容은 損金에 속하는 經費의 屬性을 說明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法人稅法에 비하여 상당히 包括的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法人稅法에는 損金算入項目과는 반대인 損金不算入項目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内容이 列舉되어 있다.⁽⁵⁴⁾

① 剩餘金의 處分을 損費로 計上한 金額

② 建設利子의 配當金

③ 法人稅, 住民稅, 附加價值稅의 買入稅額과 義務不履行에 따른 各種 納付稅額

④ 罰金, 科料, 過怠料, 加算金, 滯納處分費

⑤ 大統領이 정하는 것 이외의 公課金

⑥ 短期投資資產 이외의 資產의 評價差損

(49) 法人稅法 第13條

(50) 法人稅法 第14條의 1

(51) 法人稅法 第14條의 2

(52) 法人稅法 第14條의 3

(53) 法人稅法 第14條의 4

(54) 法人稅法 第16條

(7) 業務에 無關한 經費

(8) 法人이 株主・社員 또는 出資者인 任員에게 支給하는 賞與金

(9) 未販賣製品에 대한 搬出畢의 特別消費稅 또는 酒稅 및 其他消費稅 未納額

(10) 保險會社가 保險契約者에게 配當하기 위하여 積立한 準備金

(11) 法人の 借入金 중 建設投資金에 充當한 金額의 利子와 不明私債利子

(12) 固定資產의 減價償却費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를 초과하는 金額

(13) 任員에게 支給한 賞與金이나 任員에게 支給한 退職金 중 一定範圍를 초과한 金額

(14) 寄附金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를 초과한 金額⁽⁵⁵⁾

(15) 接待費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圍를 초과한 金額⁽⁵⁶⁾

(16) 不當行爲로 인하여 損費가 발생한 金額.⁽⁵⁷⁾

이러한 損金不算入項目은 企業會計上으로는 明白한 損費임에도 不拘하고 稅法上으로는 損金에 不算入시켜 課稅하는 것이어서 徵罰의이고 規制의인 要素가 많다.

이상과 같이 어느 事業年度의 損金에 대한 稅法上 規定內容을 分析해 보면, 損金을 決定하기 위해서는

企業會計上의 損費 + 損金算入項目 - 損金不算入項目 = 損金決定總額
의 算式이 成立됨을 알 수 있다.

3.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損益의 구체적인 内容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함께 重要한 것은 이를 期間的으로 限定하는 歸屬事業年度이다. 우리나라 法人稅法은 權利義務確定主義原則에 따라 基本原則으로서 損益의 歸屬事業年度는 益金과 損金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로 하고,⁽⁵⁸⁾ 다음과 같이 그 具體的인 内容을 列舉하고 있다.⁽⁵⁹⁾

- ① 在庫資產의 販賣損益의 歸屬年度는 引渡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 ② 資產의 讓渡損益은 契約金 이외의 代金一部(中途金)를 領收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 ③ 委託賣買損益은 受託者가 對象資產을 賣買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 ④ 賃貸는 契約條件에 따라 各事業年度別로 收入과 費用을 對應시켜 區分計算
- ⑤ 割賦販賣의 경우는 回收基準으로 各事業年度別로 區分計算——割賦基準
- ⑥ 延拂條件의 경우는 受領할 額數에 따라 各事業年度別로 區分計算——延拂基準

(55) 法人稅法 第18條

(56) 法人稅法 第18條의 2

(57) 法人稅法 第20條

(58) 法人稅法 第17條①

(59) 法人稅法 第17條②~⑩

(7) 建設 또는 長期都給契約의 경우는 建設 또는 製造를 完了한 程度를 基準으로 하여 計算——工事進行基準

(8) 法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收入利子, 賦金 또는 保險料는 實際收入基準

(9) 移延資產의 償却은 法人이 損金으로 計上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

4. 非課稅所得과 免除所得

非課稅所得은 企業會計上으로는 收益에 속하나 經濟政策, 租稅政策 등의 目적으로 法人稅를 賦課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免除所得은 經濟政策, 租稅政策目的에 따라 法人稅를 免除하는 것으로서 企業의 立場에서는 兩者가 다 法人稅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點에서 結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前者는 賦課를 하지 않고, 後者는 免除한다는 點에서 租稅法理論上 다르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法人稅法上 규정된 非課稅所得으로서는⁽⁶⁰⁾ 다음의 2項目이 있다.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發行한 債券 또는 證券이나 國民投資基金에 대한 預託金의 利子와 割引額

② 公益信託의 信託財產에서 생기는所得

한편, 免除所得으로서는⁽⁶¹⁾ 船舶 또는 航空機의 外國航行으로 인하여 생기는所得만이 규정되어 있다. 1973年까지만 하더라도 非課稅所得은 6種, 免除所得이 2種이었으나 대폭減少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稅法上 규정된 非課稅所得과 免除所得이 서로 性質上 비슷한데 대하여 日本 法人稅法에서는 非課稅所得은 法人の 性格이나 目的에 따라 非課稅與否를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所得 自體의 性格으로 인하여 課稅에서 除外할 경우와 國際租稅關係에서 課稅對象에서 除外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免除所得은 우리나라 法人稅法上의 非課稅所得과 免除所得을 같이 包括시켜 經濟政策의 見地나 其他 租稅政策의 目的에 따라 法人稅를 免除하고 있어 兩者는 明白히 구별되어 있다.⁽⁶²⁾

5. 課稅所得의 計算

지금까지 益金, 損金, 非課稅所得 및 免除所得의 概念을 우리나라 法人稅法上 규정된 内容을 中心으로 檢討하였다. 위의 說明을 總整理하기 위하여 法人稅의 경우를 例로 들어 課稅

(60) 法人稅法 第10條

(61) 法人稅法 第11條

(62) 富岡幸雄, 前掲書, pp. 145~146. 日本 稅法上 非課稅所得은 公益法人이나 法人格없는 社團 등이 收益事業을 통해 얻은 各事業年度 이외의 所得이나 法人の 清算所得, 租稅조약에 따른 非課稅所得을 의미하고 있다. (日本 法人稅法 6,7)

所得을 計算하면 다음과 같다.

企業會計上의 收益－益金不算入+益金算入=稅務會計上의 益金………(1)

企業會計上의 損費－損金不算入+損金算入=稅務會計上의 損金………(2)

益金－損金=課稅所得………(3)

課稅所得－非課稅所得=課稅標準

課稅標準×稅率=法人稅算出稅額

法人稅算出稅額－稅額控除額(外國航行所得減免 + 外國納付稅額控除 + 受入配當金稅額控除 + 臨時投資稅額控除 + 災害損失稅額控除 - 既納付稅額(中間豫納稅額 + 隨時賦課稅額 + 被源泉徵收稅額)=法人稅自進納付稅稅額

만약 自進納付가 잘못되어 加算稅가 賦課될 경우에는

法人稅決定稅額+加算稅額－自進納付稅額=法人稅告知稅額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의 (1), (2)計算式과 같이 益金과 損金을 別個로 計算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企業會計上으로 이미 法人稅 등 控除前純利益이 計算되어 있기 때문에 稅務調整計算은 통상 다음과 같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稅控除前純利益－益金不算入項目+益金算入項目+損金不算入－損金算入=課稅所得

이와 같은 式은 企業會計에 稅務會計가 相對的인 依存關係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비록 稅務會計가 그나름대로 課稅所得概念에 대해서는 獨自의인 原則을 가지고 있지만, 課稅所得을 計算하는데 있어서는 企業會計에 대하여 相對的인 依存關係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國稅基本法 第20條에 企業會計의 尊重을 明文化하고 있는 것이다.

VII. 稅務會計의 實踐的 構造

1. 序 說

課稅所得計算은 企業會計을 規制하는 商法, 企業會計原則, 財務諸表規則, 기타 各種 關係法規 등一般的으로 認定된 企業會計原則에 準據하여 計算된 企業利益을 기초로 하여 租稅目的에 따라 租稅關係法令, 租稅判例 등의 規範의인 內容과 租稅法規의 補充的 解釋을 통한 例規通牒 등을 基準으로 한 規制的計算과 더불어 調整的 計算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企業會計實務上 우리나라에서는 企業會計에서 作成된 財務諸表를 기초로 하여 稅務調整計算書를 作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稅務調整計算書는 前章에서 說明한 바와 같은 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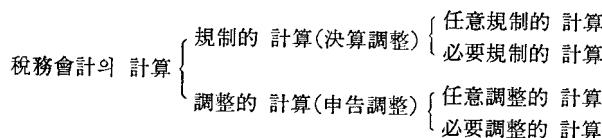
算體系를 통하여 計算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美國의 聯邦所得稅法에서는 法人稅申告書에 總所得에서 控除額을 差減하는 計算을 全體的으로 표시하고 各種 明細書 및 期初와 期末을 비교한 貸借對照表를 添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아울러 稅務調整을 통한 調整後 貸借對照表을 作成하는 算出過程을 明示한 稅務精算表를 添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法人稅法이나 日本 法人稅法과 같이 美國의 경우도 確定決算基準을 採擇하여 會社의 決算을 基準으로 課稅所得을 計算할 것을 強調하는 것으로 푸리된다.

한편, 獨逸稅法에 있어서는 所得課稅의 基礎가 되는 稅務貸借對照表(steuerbilanz)를 作成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商事貸借對照表에서 誘導된 것이다. “稅務貸借對照表에 대한 商事貸借對照表의 基準”에서 稅法上 課稅所得의 決定은 商法上의 成果決定에 依存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正規簿記의 原則에 따른 企業會計에 稅務會計가 일단 依存하고 稅法上의 特別規定의 制約을 받아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에는 稅法이 有效하게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獨逸稅法도 역시 稅務貸借對照表라는 特別한 用語와 制度를 사용은 하고 있으나 그 內容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各國이 이렇게 企業會計의 結果를 調整하여 課稅所得을 計算한다고는 하지만, 前章에서 說明한 여러가지 理由로 말미암아 純粹會計理論에 따른 稅務會計라는 것은 하나의 空想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稅法上의 各種 規制規定과 調整規定을 잘 履行하여 計算하여야 하는데 稅務會計의 計算을 性質과 類型別로 分析하면, 다음 表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2. 決算調整時의 規制的 計算

企業會計에 있어서는 會計年度末에 決算調整을 하는데, 이것은 企業의 方針에 따라 任意로 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된다. 그러나, 企業이 租稅負擔을 輕減할 目的으로 損費를 過大計上하고, 收益을 過小計上할 可能성이 있으므로 稅法에서는 이를 規制하게 된다.

이러한 規制에는 두 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는, 企業會計方針의 任意性을 規制하는 것으로서 任意規制的 計算이라고 할 수 있다.

任意規制的 計算의 例로서는 貸損充當金을 비롯한 各種 充當金이나 準備金의 設定, 固定

資產의 減價償却費 計上, 移延資產의 債却 등 企業經營上 自由裁量이나 選擇의 餘地가 있으나 稅法上 特定規定을 두어 어느 範圍를 넘으면 認定을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는, 企業會計上 處理는 어떻게 하더라도 相關이 없지만 일단 어느 會計方法을 택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할 것을 規制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必要規制的 計算이라고 할 수 있다. 必要規制的 計算의 例로서는 在庫資產의 評價方法, 減價償却의 方法 등을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方法을 채택할 것을 申告하는 것은 自由이나 일단 채택한 후에는 이를 함부로 變更하지 못하는 것이다.

3. 納稅申告時의 調整的 計算

企業會計에서 稅務會計로 轉換하는 過程을 “調整”이라고 생각할 때, 納稅申告時에는 企業會計 結果를 가지고 稅法上 規定에 따라 各種 修正을 가하게 된다. 申告調整時의 計算對象은 일단 企業會計에서 決定된 純利益에 稅法上 規制的 規定을 적용하여 調整한 課稅所得을 土臺로 하여 이것을 다시 租稅政策上이나 經濟政策上의 目的에 따라 調整하는 것이다.

이러한 調整計算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任意調整的 計算인데, 이것은 調整을 행하는 경우에는 企業의 立場에서 惠澤을 받게 되나, 만약 그렇지 않으면 惠澤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惠澤의 受惠與否는 企業이 任意로 決定할 문제이므로 이것을 任意調整的 計算이라고 한다. 그 例로서는 各種 稅額控除나 益金不算入項目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각己 申告를 한후에야 控除나 益金不算入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는, 申告時에 반드시 調整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調整을 하지 않으면 加算金을 물게 되는데, 이것을 必要調整的 計算이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各種 損金不算入項目 중에서 企業이 損費로 支出한 것이라하더라도 租稅政策上이나 經濟政策上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申告時에는 이를 반드시 調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VIII. 結 言

本研究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定立發展되지 못하고 있는 稅務會計學 研究의 序說的研究라고 할 수 있다. 現代 企業經營에서 이미 稅務問題는 經營管理와 意思決定時에 重大한 考慮要素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稅務會計에 經營管理的 側面은 이미 實務界에서 強調되어 온지 오래이다. 그러나, 大學이나 一般 講義時의 稅務會計 講義는 稅務會計解明論에 始終하고 있는 실정으로 課稅所得의 概念과 稅務會計 構造의 原則的 側面에 대해서는 아직 研究가 未洽한 實情에 놓여 있다.

本研究는 課稅所得을 어떻게 適正妥當하게 計算하는가 하는 體系를 會計의 妥當性과 經營·經濟的인 側面에서 研究하여 보다 나은 稅務會計制度를 확립하려는 意圖아래, 美國·獨逸·日本 등의 경우와 比較檢討하여 私見을 提示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稅務會計는 우리나라 特有의 狀況이 있는 관계로 獨自의인 概念設定이 있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관계로 先進外國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外國學者들의 概念의 導入은 우리나라 特有의 狀況과 差異이 생기게 되고 概念設定이 不充分한 상태에서 實施되는 稅法規定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屢次에 걸친 稅法改正과 이에 따르는 稅法의 補完은 體系的인 面에서도 考慮할 만한 素地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稅法이 租稅法規라는 점에서 다를 때는 法體系上의 문제가 되겠으나 稅法自體가 일반적으로 認定되는 企業會計原則을 따른다고 할 때 稅務會計原則論의 면에서도 문제가 提起되게 되는 것이다.

本研究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稅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企業會計原則은 會計學上으로 설명되고 있는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稅法의 法源으로서 各種 事例나 例規通牒, 國稅審判所判例 등 廣範하게 걸쳐있다. 그러므로 “企業會計原則”이나 “財務諸表規則”이 어느 정도 企業會計의 自律性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稅務會計에서는 비록 企業會計에 相對的으로 依存은 하고 있으나 社會政策的, 經濟政策的인 면에서 特定部分을 限定 또는 強調하기 위하여, 企業會計原則의 承繼외에도 修正·補充·創設·強調 등 補完措置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稅務會計學의 가장 基本概念인 課稅所得을 先進外國에서 通說로 認定되고 있는 “純資產增加說”에 따라 다음과 같이 定義하는 것이 現實의이며 妥當할 것이다.

課稅所得은 基本的으로 資本의 追加의인 出資와 引出, 所得의 處分을 제외하고, 두 時點間에 있어서의 모든 源泉으로부터 생기는 經濟力 實現의 純增加額으로서 貨幣的 單位로 測定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見解는 課稅所得의 概念發展의 歷史를 더듬어 볼 때, 現在에 와서 認定될 수 있는 定義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은 定義設定에 의하여 課稅所得은 總益金에서 總損金을 공제한다는 基本의인 計算構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本研究에서는 지금까지 現象으로서 存在해온 稅務會計를 理論的으로 體系化하여 稅務會計學이라는 獨自의인 研究領域을 定立하기 위한 試圖로서 企業會計와의 依存關係를 稅務會計原則論의 입장에서 檢討하였다.

그러나, 屢次 強調한 바와 같이 本研究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成熟되고 있지 않은 稅務會計學의 序說的 研究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稅務會計와 企業會計를 均

衡・調整한다는 점에서 今後 稅務會計學의 樹立을 위한 하나의 里程表를 提示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稅務會計學이 租稅負擔의 公正한 配分秩序를 세운다는 根本理念에 立脚하여 會計學의 特殊領域으로서의 “稅務會計學”을 成立發展시키는 것은 會計學徒에게 負荷된 時代的 使命이라 아니할 수 없다.

《附記 本 論文은 產學協同財團의 研究費支援을 받아 作成된 것임》